#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호주(Austrailia)의 여성폭력 정부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학자 등 관련자 면담및 자료 수집

2011. 07.

보고자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출장개요

- 과제명: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 Ш
- 조사 대상지역: 오스트레일리아
- 출장자: (연구진)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방문 기간: 7월 8일 7월 16일 (7박9일)
- 비용부담: 본원 연구사업비

## 1. 목적

- □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 청소년대상 폭력 정책 사례및 폭력예방 프 로그램 자료수집
- □ 방문기관및 관련자 면담
- ◎ Domestic Violence Victoria (DV Vic) 방문
- ◎ Family Violence Reform Coordination Unit Office of Women's Policy 방문
- ◎ Mother and Child Health Research 방문
- ◎ Family Violence Reform Coordination Unit Office of Women's Policy 방문
- © Consultant,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방문
- □ 오스트레일리아의 폭력관련 Women Research Network 마련
-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콜로키움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search Network") 참석

## 2. 참가자 명단

		기관	부서	직위	이름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장미혜

## □ 면담대상자 명단

ĺ	면담	Alison Macdonald	Dr. Angela Taft MPH	Rachael Green	Dr Tracy Castelino
l	자		PhD		MSW Phd.
I	직위	Policy Officer	Associate	Manager	Consultant,

		Professor/Principal Research Fellow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소속	Domestic Violence Victoria (DV Vic)	Mother and Child Health Research	Family Violence Reform Office of Wom	
전화	Phone: 03 9921 0820	Ph: 61 (3) 8341 8571		mobile: 0417 362 031
팩스	Fax: 03 9921 0827	Fax: 61 (3) 8341 8555		
주소	Level 2, Queen Victoria Women's Centre 210 Lonsdale St, Melbourne 3000	215 Franklin St, which is between William and Queen St and close to both Flagstaff station and the Elizabeth St tram National Convenor, PHAA Women's Health SIG	Industry, Workforce & Department of Hun Lonsdale street (nea Spring and Lons	nan Services 50
홈페	www.dvvic.org.au	http://www.latrobe.edu .au/mchr/html/staff/taf t.html http://www.phaa.net.a		
비고	alisonmacdonald@ dvvic.org.au	215 Franklin St, Melbourne 3000 La Trobe University VIC 3000, Australia		Meeting at Brunetti's in Carlton

## Ⅲ. 출장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및 내용

## 1. 수집한 자료목록

Council against Violence, 2006, Management of the whole family when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present.

The National Council Plan for Australia to Reduce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2009-2021. Time for Action. 2009.

VicHealth. 1999.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Community attitudes to violence against women.

VicHealth. 2007. Preventing violence before it occurs: A framework and background paper to guide the primary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Victoria.

VicHealth. 2010. National Survey on Community Attitudes to Viloence Against Women 2009.

Victoria Police. 2009. Living Free From Violence-Upholding The Right.

#### 2. 내용요약

#### 가. 호주의 폭력예방정책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이며, 호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5년도에 시행된 17,3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호주의 개인안전조사(Personal Safety Survey)에 따르면, 15세 이상의여성 세 명중 한 명이 육체적 폭력을, 다섯명중 한 명이 성적 폭력을, 16%의 여성이 현재나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2-3년 사이 호주의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81억\$에 다다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ccess, 200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호주의 기업이 손실을 입는 액수는 5억\$에 달하며 피해자가 병가를 받음으로서 인해입는 손실액은 3,000천만\$에 이르며, 이직으로 인한 인사비용은 600만\$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Henderson & Associates, 2000).1)

여성과 아동에 대한 만성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장애여성, 이주여성과 쉼터에서보호중인 여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폭력관련 서비스 제공자, 나성집단, 법조계 관련인사, 정부관료,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종교계 지도자, 학자와 연구자, 교사를 포함한 2000명의 자문을 얻어 <2009-202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정책>(이하 '폭력감소정책')을 수립하였다. 국가수준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폭력감소정책'은 안전, 공동체적 책무, 평등성과 다양성, 책임, 정의, 지속성,

<sup>1)</sup>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지식과 의무라는 일곱 개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폭력감소정책'의 특징은 1) 성적인 학대와 가정폭력을 서로 결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며, 2) 폭력을 감소할 수 있는 책임이 지역사회내의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주지시키고, 3) 여성과 아동대상이 폭력예방을 지원하며, 4)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므로 예방에 초점을 두고, 5) 단순히 "폭력방지"에 대한 구호를 넘어서서 생애전반에 걸쳐서 아동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교육시킴으로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6) 폭력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7) 강력한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고, 8)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고, 여성과 아동과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당을 초월한후원을 하고, 9) 정부의 각 수준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이 첫 번째 목표로는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들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예방에 중점을 두며 지역사회지도의 양성, 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강화, 폭력예방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남성의 행동 촉진,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 증거중심주의의 확립을 채택하고 있다. 두번째 목표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개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예방교육을 위한 역량을 수립하며, 모든 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관계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부모교육을 지원하며,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목표는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역 사회 수준에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성, 이용가능성,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와 제공자의 능력강화 안전한 시설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증진, 서비스에 대해서 골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호주는 여성이폭력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적 개정과 법안이 본래의 의도대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적하면서 평등한 사법처리의 보장, 시민의 법률적 배상(civil remedies)에 있어 형법과 안전에 대한 우선권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법률적 처리에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주며, 사법부의

당국자와 경찰과 검찰등의 법집행기관과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범죄자들의 폭력을 방지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법률적인 처벌규정을 명시해야하는 동시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폭력행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힘의 남용과통제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전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위한 실천강령으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의 변화, 초기의 폭력방지initialtive에 대한 접근성의 증진,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증거중심주의가 논의되었다.

여섯 번째 목표로는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와 기금이 각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자원의 낭비가 없게 하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어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충족시키고, 협력적으로 폭력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증거주의에 입각할 것이 제시되었다.

일곱 번째 목표로는 폭력감소정책이 2021년까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지침으로는 1) 장기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2)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3) 정부정책의 진행방향과 공조를 이루어야 하며, 4) 기존정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기존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범위, 복합성, 효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2)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3) 연방과 주정부의 법률, 정책, 서비스를 입안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해주고,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수준별로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주고, 5) 정부의 활동과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자가 여성과 아동과 폭력범죄자들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6) 폭력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향상된 정도를 추적해서 감시하고 평가하며 관련자료를 모을 수 있는 국가적인 기본들을 수립해야 한다.

여덟 번째 성추행과 가정폭력이 세대를 이어 계속되면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성추행과 가족폭력체 초점을 맞춘 명확하게 규정되고 지체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행동강령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으로는 1)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대다수의 희생자들의 권

리에 초점을 맞추고, 2)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장애인등의 다양성과 젠더평등성을 보장하도록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3) 호주의 여성과 남성, 지역사회와 조직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며, 4)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경험에 대처해야 하며, 5)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 보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되고 접근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켜야 하고, 6) 범죄자들의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7)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성공한 사례들을 조명해서국가전체의 성공사례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수준	ន	인들
	폭력지지	폭력지지 태도를 지지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
개인	<ul> <li>어린시절 폭력지지 문화규범에의 노출</li> <li>전통적인 성역할 및 관계를 지지함</li> <li>성 평등에 대한 지지가 약함</li> <li>발달 연령 및 단계 (소년 및 젊은 남성</li> <li>특권에 관한 남성의 적응 및 인지(남성)</li> <li>낮은 교육 수준(여성)</li> </ul>	● 폭력에 노출된 어린시절(남성에게 더 부 정적인 영향)
조직	● 스포츠 하부 문화, 대학 동아리, 군대 와 같은 남성의 환경	<ul> <li>교회 및 신앙을 기반으로 한 조직</li> <li>형사사법, 사회봉사, 의료제도 관행</li> <li>직장 문화</li> </ul>
공동체	● 남성 동료 문화	●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 성에 관해 문화적으로 뚜렷한 규범 ● 이웃 문화

● 포르노그라피

사회 ● 여성을 대단히 구별짓는 방식으로 묘 사하는 광고

- 여성, 폭력, 성별 관계를 묘사하는 텔레 비전, 음악, 영화 및 대중매체
- 폭력과 성별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 하는 캠페인과 사회운동

[표 5]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

개인/관계	공동체와 조직	사회
<ul> <li>사회적 고립과 지원제도에 제한된 접근</li> <li>수입, 교육, 직업</li> <li>상대적인 노동력 상태</li> <li>알코올과 불법약물 복용</li> <li>빈곤한 육아</li> <li>인격 특성과 약한 정신건 강</li> <li>관계와 부부갈등</li> <li>이혼/별거</li> </ul>	<ul> <li>● 약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 적 결합, 여성들 간에 제한 된 단체 활동</li> <li>● 가족의 사생활 보호에 강 력한 지원</li> <li>● 지역 특성(서비스 기반, 실 업, 빈곤, 집단 효과)</li> </ul>	<ul> <li>가족의 사생활과 자치권에 대한 지원</li> <li>물질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예: 고용, 교육)</li> </ul>

[표 6]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요인: 자원에의 접근과 지원제도

전략	논평	기본결정자/ 원인이 되는 요인 해결
직접적인 참여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은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하는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존중할만한 젠더 관계를 알려준다.	<ul> <li>학교에 대학에서 효과 좋은 증거(flood 2005-2006,2006).</li> <li>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은</li> </ul>	●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규범 ● 젠더역할과 정체성, 젠더 평등에 관한 신념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집약적, 장기적, 다양한 방식 교습법으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 접근방식의 개선과 기술 지원, 노동력 구축의 추가작업이 요구됨 ●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위한 주요 예방 프로그램들의 개발 효과와 실행가능성을 조사하는 추가 조사가 요구됨 ● 스포츠 환경에서의 이행 증거는 데이트에서 효율적이지 않음. 초점은 데이트 폭력에 맞춰져 옵	
● 젊은 여성 피해를 줄이고 벗어날 기회를 강화하기 위 한 교육 및 자기방어 프로 그램	● 교육 프로그램의 작은 유익한 효과(Hanson&Broom)	<ul> <li>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규범</li> <li>젠더역할과 정체성, 젠더평등에 관한 신념</li> <li>폭력노출과 관련된 상황적요인</li> </ul>
<ul> <li>젊은 여성의 육아 향상을위한 프로그램, 학교 커뮤니티와 어른들의 지원으로 과제물 증진, 학교 성취를 강화함</li> </ul>	<ul><li>이론적 해석</li><li>폭력의 영향에 관해 이 비 평에서 확인된 평가가 없음</li></ul>	<ul> <li>아이들에게 부족한 육아와 관심</li> <li>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 한됨</li> <li>사회적 고립</li> </ul>

[표 7]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요인

기그	괴러기그	표출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전략	관련자료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 사회적 연결망과 후원서비 스에 여성이 연관되도록 개입 (이웃, 후원집단, 여가활동, 학 교/지역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 남성이 사회적 후원연결망 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 로그램	● 실행을 위한 이론적 기준과 증거(Immigrant Women's Domestic Violence Service 2006)	● 사회적 고립 ● 후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은 미약 ● 이혼과 별거		
● 여성폭력에 대한 건강과 같 은 다른 사회적 요인과 관 련된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확대	•	•		
<ul> <li>● 남성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개입</li> <li>● 알콜과 마약예방프로그램</li> <li>● 교육과 고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li> <li>●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정신건강프로그램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을 가진 를 위한 프로그램의 초기개입</li> <li>● 폭력의 수용과 사용을 감소와 관련된 비폭력적수단의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li> </ul>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예방하는 접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이론적인 논의는 있으나 평가기준은 없음	<ul> <li>알콜과 불법적인 약물사용</li> <li>동료집단의 폭력</li> <li>교육, 직업, 소득</li> <li>고용</li> <li>개인의 인성적 특성</li> <li>적절한 양육과 부모노릇의 부족</li> <li>사회적 고립</li> </ul>		

[표 8] 폭력이 표출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1

전략	관련자료	표출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	
조직과 인력의 발달		- 11221 - 1	
대상집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을 지니도록 핵심적인 인력 (정부와 NGO부분의 자원봉 사자와 상근자)을 지원	● 개인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Taft, 2004),이념적 지 도자(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2006), 남아의 스포츠코 치(AFL, 2005)	● 남성적인 동료와 조직문화  ● 성역할분리에 대한 업격한 신념과 성평등성에 대한 약한 지지  ● 남성으로서의 자각  ● 남성의 지배와 재산에 대한 통제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수단과 여성 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관계의 수 립과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조직적 환경의 건설 조직과 정책, 절차와 인력훈 런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략	● 효율성 평가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Taft, 2004), 스포츹클럽(AFL, 2005), 종교집회의 장소(Jones et al. 2006; Wolfe et al. 2001)과 다른 장소(Finucane & Finucane, 2003)	<ul> <li>● 남성적인 동료와 조직문화</li> <li>● 성역할분리에 대한 업격한 신념과 성평등성에 대한 약한 지지</li> <li>● 남성으로서의 자각</li> <li>● 남성의 지배와 재산에 대한 통제</li> </ul>	
	•	모두 포함됨	

[표 9] 폭력이 표출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 2

폭력의 주요 결정자와 운동 과제					
	<u> </u>				
남성과 여성 /	나이에 통등한 진행과 존중어린	· 감정적 유대			
개인/관계 결정자	개인/관계 결정자 공동체&조직 결정자 사회 결정자				
● 고정된 성역할과 정체성					
에 대한 믿음, 성평등에	● 성에 관해 문화적으로	● 성평등을 지지하고 고정			
대한 약한 지원	뚜렷한 규범	된 성역할을 반대하는			
● 남성의 순응/ 특권 인식	● 남성적인 동료&조직 문	것에 제도적&문화적으			
● 관계에서 남성지배와 부	화	로 약한 지원,			
의 통제					
주요 기여 요인과 운동 과제					

비폭력 규범 <sup>최</sup> 개인/관계 기여자	수진/폭력에 노출 공동체&조	들되기 전에 결과	과를 줄 <sup>c</sup>	기는 것 사회 기여자
●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를 지지하는 태도 ●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목 격 또는 경험함 ● 대인 혹은 학교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에 노 출 ● 대인간의 논쟁 해결방식 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수용	, , , ,	. –	을 재 • 대인 책 방스 는	복/여성에 대한 폭력 허용하거나 약한 제 민관계, 시민 또는 정 논쟁을 정립하는 한 식으로 폭력을 용인하 분위기
개인/관계 원인	원 제도와 자유 공동체&2	원에의 접근 향/ 조직 워이	상	사회 원인
● 사회적 고립과 지원제도 에 제한된 접근 ● 수입, 교육, 직업 ● 상대적인 노동력 상태 ● 알코올과 불법약물 복용 ● 빈곤한 육아 ● 인격 특성과 약한 정신 건강 ● 관계와 부부갈등 ● 이혼/별거	<ul> <li>약한 사회 회적 결합, 제한된 단기</li> <li>가족의 시 강력한 지역</li> <li>지역 특성</li> </ul>	적 관계와 사 여성들 간에 세 활동 ·생활 보호에 원 (서비스 기반,	에 ● 물결	주의 사생활과 자치권 대한 지원 실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예: 고용, 교육)
예방조치		,	주민	집단
● 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사고 작업적인 참여 프로그램 용 용 호	구니티 강화 구니케이션과 고적인 마케팅 호 법 및 정책 개	<ul><li>아이들</li><li>청년들</li><li>여성과 남/</li><li>불이익을</li><li>지역</li></ul>		<ul> <li>원주민 공동체</li> <li>농촌</li> <li>문화와 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li> </ul>

	형		● 장애여성
서비스 • 협력 • 공동체 신	● 예술 포 크레 이 수 포 크레 이 구문 중간 조직 조직은:  ■ 조직은:  ■ 조직하고 폭력의 해무문에 걸쳐 협력 관계에서 작동 기반한 폭력예방 운동실행  ■ 접근용이하고 역성을 위한 지원	● 사이버 공 선기술 화 결과 - 환경은: • 비폭력, 존중감 구축, 평등한 젠 더 관계의 가치 와 지지규범 • 사람들 사이의 연결 구축, 공식 적인 자원과 비 공식적인 자원과 비 공식적인 지원 을 연결 • 폭력을 해결하 기 위해 조치를 취함	● 사법 ● 대학 ● 군사 기관  사회
	장기	<u>이익</u> 	
개인/관계      폭력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와     사망률 저하      대인기술&가정	조직      폭력예방 자원과     운동을 분야와     체계에 걸쳐 통 합	공동체  ● 젠더 평등의 가 치와 여성과 남 성 간의 존중할 만한 관계의 공	사회

[표 10]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에 관한 주요 안내 프레임워크

#### 나. 빅토리아 정부의 폭력예방정책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0-60%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전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47%의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2). 이에 대한 대응으로 WHO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폭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빅토리아주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속에서 여성안전전략(Women's Safety Strategy(OWP, 2002))과 여성건강과 복지전략(Women's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VDHS, 2002)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체의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차적 으로 방지할 수 있는 리더 쉽의 강화		• 여성폭력을 허용하는 태 도와 사회적 규범
여성폭력과 그것을 용인하 는 사회적 규범에 대항하는 연합체의 건설	● 명시된 평가기준은 없음. 이러한 개입은 완벽한 이론적 기준이 중요하며, 일차예방이 새로운 영역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줌.	<ul> <li>젠더역할과 정체성과 연관된 신념과 실천</li> <li>여성폭력에 대한 태도</li> <li>이웃의 특성</li> </ul>
여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효율적이면서 사회적인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입	호주의 원주민(PADV, 2003)과 다른 서국국가(Davis, Parks & Cohen, 2006), 국제적인 사례	● 집합적 효율성 ● 사회적 응집력

	2006)까지 포함하여 발전	
	국과 저발전국 모두에서 수	
	용성과 성취도가 높은 실행	
	되어 왔음.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결속		
력과 공동체의 효율성을 수	이론적 근거	
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측	이런적 단기 	
면에서의 initialtive 확보		
사회적 연결가 결집 공동체	여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범	요인에 대한 명시된 평가기	
위한 initialtive확보	준은 없ㄹ음	

[표 11] 폭력이 표출되는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

박토리아주도 〈Living Free From Violence-Upholding The Right〉도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2009-2014년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개년에 걸친 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둘째 보다 통합된 서비스전 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셋째, 예방과 초기개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넷째,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VAWC)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 각각의 목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각각의 성과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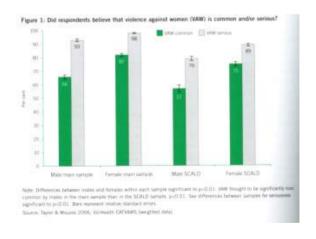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고되는 가정폭력을 10%, 성폭력은 15% 증가시키고, 빅토리아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를 10% 증가시킨다. 두 번째 목표의 성과지표는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서비스기관까지 이관하는 사례를 15%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의 성과지표는 (가족과 관련된) 아동에 대한 육체적 학대에 대한 보고를 10% 증가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는 시민들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얻기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 목표인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과 자원봉사단체의 지도자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성희 롱및 아동학대방지팀(SOCIT)을 점차 확대시키며, SOCIT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를 위한 기본틀의 질을 증가시키고, 통합된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강한 문화, 강한 사람들, 강한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빅토리아 경찰이 노력

하며 경찰과 성희롱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와 아동보호기관담당자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육체적 성적 폭력을 통해서 경제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학대를 지칭하는데, 공적및 사적생활에서 발생하는 젠더와 관련된2) 폭력행위와 폭력에 대한 위협, 강압이나 자유의 박탈은 여성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상해와 고통을 수반한다(UN, 1993). 가정폭력은 한 개인이 가족에 대해서 혹은 현재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반복적인 폭력과위협 및 강제적이고 통제하는 행동이다.

이때 폭력적인 행동이란 육체적 공격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위협, 성폭력,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 경제적인 통제, 재산 훼손, 사회적 고립 및 두려움속에서 살도록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방법들을 모두 지칭한다.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0-60%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전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47%의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2). 이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이며, 호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5년

이때 젠더라함은 특성한 시점에서 남성이나 여성과 결부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기회를 지칭한다.

도에 시행된 17,3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호주의 개인안전조사(Personal Safety Survey)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여성 세 명중 한명이 육체적 폭력을, 다섯 명 중 한명이 성적 폭력을, 16%의 여성이 현재나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휴유증은매우 커서 2002-3년 사이 호주의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81억\$에 다다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ccess, 200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호주의 기업이 손실을 입는 액수는 5억\$에 달하며 피해자가 병가를 받음으로서 인해입는 손실액은 3,000천만\$에 이르며, 이직으로 인한 인사비용은 600만\$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Henderson & Associates, 2000). 3)

여성과 아동에 대한 만성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장애여성, 이주여성과 쉼터에서보호중인 여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폭력관련 서비스 제공자, 나성집단, 법조계 관련인사, 정부관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종교계 지도자, 학자와 연구자, 교사를 포함한 2000명의 자문을 얻어 <2009-202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정책>(이하 '폭력감소정책')을 수립하였다.

국가수준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폭력감소정책'은 안전, 공동체적 책무, 평등성과 다양성, 책임, 정의, 지속성, 지식과 의무라는 일곱개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폭력감소정책'의 특징은 1) 성적인 학대와가정폭력을 서로 결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며, 2) 폭력을 감소할 수 있는 책임이지역사회내의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주지시키고, 3) 여성과 아동대상이 폭력예방을 지원하며, 4)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므로 예방에 초점을두고, 5) 단순히 "폭력방지"에 대한 구호를 넘어서서 생애전반에 걸쳐서 아동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교육시킴으로서 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6) 폭력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7) 강력한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고, 8)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고, 여성과 아동과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당을 초월한 후원을 하고, 9) 정부의 각 수준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이 첫 번째 목표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예방에 중점을 두며 지역사회지도의 양성, 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강화, 폭력예방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남성의 행동 촉진,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 증거중심주의의 확립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개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예방교육을 위한 역량을 수립하며, 모든 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관계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부모교육을 지원하며,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들수 있다.

세 번째로 목표는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역 사회 수준에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성, 이용가능성,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와 제공자의 능력강화 안전한 시설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증진, 서비스에 대해서 골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증거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호주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적 개정과 법안이 본래의 의도대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적하면서 평등한 사법처리의 보장, 시민의 법률적 배상 (civil remedies)에 있어 형법과 안전에 대한 우선권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법률적 처리에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주며, 사법 부의 당국자와 경찰과 검찰등의 법집행기관과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범죄자들의 폭력을 방지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법률적인 처벌규정을 명시해야하는 동시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할 만한 효율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아동에 대해 힘을 남용하는 것과, 남성이 여성과 아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전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야한다. 이를 위한 실천 강령으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의 변화, 초기의폭력방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증진,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증거중심주의가 논의되었다.

여섯 번째 목표로는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와 기금이 각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자원의 낭비가 없게 하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어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충족시키고, 협력적으로

<sup>3)</sup>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폭력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증거주의에 입각할 것이 제시되었다.

일곱 번째 목표로는 폭력감소정책이 2021년까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지침으로는 1) 장기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2)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3) 정부정책의 진행방향과 공조를 이루어야 하며, 4) 기존정책과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기존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범위, 복합성, 효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2)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3) 연방과 주정부의 법률, 정책, 서비스를 입안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해주고,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수준별로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주고, 5) 정부의 활동과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자가 여성과아동과 폭력범죄자들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6) 폭력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향상된 정도를 추적해서 감시하고 평가하며 관련 자료를 모음 수 있는 국가적인 기본틀음 수립해야 한다.

여덟 번째 성추행과 가정폭력이 세대를 이어 계속되면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성추행과 가족폭력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게 규정되고 지체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으로는 1)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대다수의 희생자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2)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장애인등의 다양성과 젠더평등성을 보장하도록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3) 호주의 여성과 남성, 지역사회와 조직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며, 4)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경험에 대처해야 하며, 5)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 보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되고 접근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켜야 하고, 6) 범죄자들의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7)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성공한 사례들을 조명해서국가전체의 성공사례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란 개별사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폭력을 유발하는 지역사회와 개인및 사람들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볼 때만 해 결될 수 있다는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다.

-	개인/개인간의 관계	지역사회와 조직	사회적
	- 고정된 성역할과	-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 남녀불평등에 대한 약한

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과 성평등성에 대한		
약한 지지	규정하는 문화적 규범	제재와 엄격한
- 남성지배적 성향과	- 남성집단들간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권리	조직문화	제도적 문화적 지지
- 친족의 재산에 대한	2167	제요의 변환의 기기
남성의 지배와 통제		

[표 12]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결정하는 요인: 젠더역할과 관계

이러한 시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폭력감소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폭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호주의 여러 주중의 하나인 빅토리아주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속에서 여성안전전략(Women's Safety Strategy(OWP, 2002))과 여성건강과 복지전략(Women's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VDHS, 2002)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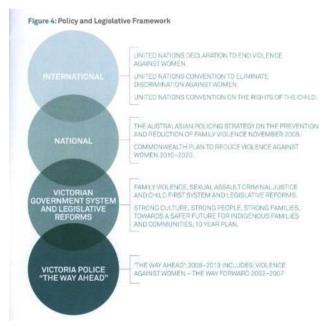
박토리아주도 〈Living Free From Violence-Upholding The Right〉도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2009-2014년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개년에 걸친 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둘째 보다 통합된 서비스전 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셋째, 예방과 초기개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넷째,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VAWC)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중진시킨다.

이 각각의 목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각각의 성과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고되는 가정폭력을 10%, 성폭력은 15% 증가시키고, 빅토리아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를 10% 증가시킨다.

두 번째 목표의 성과지표는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서비스기관까지 이관하는 사례를 15%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의 성과지표는 (가족과 관련된) 아동에 대한 육체적 학대에 대한 보고를 10% 증가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는 시민들을 증가시킨다.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및 아동폭력의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들

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UN의 선언과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보호규약과 호주의 국가적 수준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와 감소를 위한 전략과 2010-2020 여성폭력감소정책, 그리고 빅토리아주정부 수준에서는 가정폭력, 성희롱방지를 위한 사법체제와 법률적 개혁및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강한 문화, 강한 국민, 강한 가족을 위한 10년 정책,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경찰은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정부의 부서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2-2007년 사이의 실행하기 위한 행동강령 25개를 수립했다.



[그림 2]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경우 15-44세의 연령집단의 여성들 중 9%정도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VicHealth)는 1987년에 담배세를 기금으로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대중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다.

VicHealth는 2003년부터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시책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선정하였다.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이나사회적 관계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6년 Victorian Survey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VicHalth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1) 정부와 서비스제공자, 지역의 연구자, 여성집단과 남성집단, 자선단체, 기업과 협력관계를유지하고, 지역과 전국규모의 미디어와 지역사회의 모임과 컨퍼런스와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2) 관련분야 중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 여성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예방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들과의 조직적 협동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며, 4) 여성에 대한 폭력적 태도를 알리고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홍보활동을 하였고, 5) 예방전략의 효율성과 폭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와 평가를 지원하였으며, 6)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및 자원배분, 법률적 개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여성폭력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폭력이 발생한 이후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거나 폭력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개입에 중점을 두었다. 초기의 개입은 폭력했동의 징후가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입은 단순히 폭력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폭력발생의 바닥에 깔린 성불 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폭력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있는데 폭력을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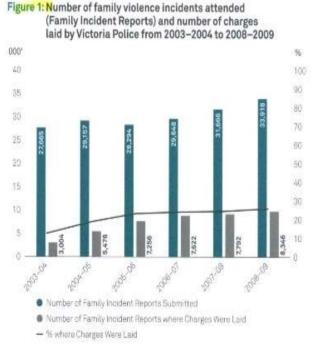
VicHealth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지역적 차이는 서베이조사결과에서도 반영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폭력을 '항상', '자주',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라고했을 때 응답자의 태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에서 얼마나 여성폭력을용인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VicHealth, 2010). 성평등성과 가정폭력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성평등성이 낮은 지역거주자의 71%가, 성평등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증 94%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호주의 폭력방지정책의 가장 큰 특성으로는 전지구적 수준과 국가전체의 수준 및 주정부와 지역경찰의 수준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있으며,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경찰의 준에서 2002-2007년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빅토리아 여성건강정책(Women's Health Victoria)중 10대 전략으로 채택되었다(WHO, 2006).

VicHealth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후원하는데 주력해왔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며 여성의 자부심과 자신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워주기 위한 직접참여프로그램의 실시와 여성폭력의 일차적 예방을 위해 힘쓰는 지역사회내의 소집단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포럼과 컨퍼런스의 개최 등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호주의 여러 주중 한 주인 빅토리아주를 대상으로 한 빅토리아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경찰에 보고된 가정폭력발생율은 2003-2004년 28,000건에서 2008-2009년 34,000건으로 2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이중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2003-2004년 3,004건에서 208-2009년 8,346건으로 증가했다. 호주정부의 경우 신고건수나 처벌건수의 증가를 폭력예

방정책의 성과지표로 보고 있다.

VicHealth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정책의 특성은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는 사회적 요인과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적 요인과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성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상의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대처(multilevel-strategies)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VicHealth, 2010).

# THE FOLLOWING PERFORMANCE MEASURES WILL TRACK ACHIEVEMENTS AGAINST OUR OBJECTIVES

OBJECTIVE	MEASURES OVER THE NEXT 5 YEARS
Respond to and investigate family violence, sexual assault and child	Increase family violence reports to Victoria Police by 10% and charges laid by 5%.
abuse more effectively.	Increase sexual assault reports to Victoria Police by 15%.
	Increase 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 applications by Victoria Police by 10%.
Take a leadership role in driving integrated service delivery.	Increase referrals from police to family violence services by 15%.
Reduce risk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of ongoing exposure to violence through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Increase reports for child physical assault (family related) by 10%.
Increase members' understanding about issu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VAWC)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policing responses.	Demonstrated increase in members understand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그림 4]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제 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라 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와 문화,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문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원인이 복잡한 만큼 몇 개의 정책이나 법의 변화만으로 없어 질 수 없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호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6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빅토리아주 경찰에 보고된 사례는 2003-2004susdp 28,000명에서 2008-2009년에는 34,000명으로 22%가량 증가하였다(Victoria Police. 2009).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으며 친밀한 배우자에 의한 살인은 2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빅토리아 여성건강정책(Women's Health Victoria)중 10대 전략으로 채택되었다(WHO, 2006). VicHealth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후원하는데 주력해왔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며 여성의 자부심과 자신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워주기 위한 직접참여프로그램의 실시와 여성폭력의 일차적 예방을 위해 힘쓰는 지역사회내의 소집단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포럼과 컨퍼런스의 개최 등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VicHealth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정책의 특성은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는 사회적 요인과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적 요인과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성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상의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대처(multilevel-strategies)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VicHealth, 2010).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경우 15-44세의 연령집단의 여성들중 9%정도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VicHealth)는 1987년에 담배세를 기금으로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대중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다.

VicHealth는 2003년부터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시책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선정하였다.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이나사회적 관계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6년 Victorian Survey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VicHalth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1) 정부와 서

비스제공자, 지역의 연구자, 여성집단과 남성집단, 자선단체,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과 전국규모의 미디어와 지역사회의 모임과 컨퍼런스와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2)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 여성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예방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들과의 조직적 협동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며, 4) 여성에 대한 폭력적 태도를 알리고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홍보활동을 하였고, 5) 예방전략의 효율성과 폭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와 평가를 지원하였으며, 6)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및 자원배분, 법률적 개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여성폭력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폭력이 발생한 이후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거나 폭력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개입에 중점을 두었다. 초기의 개입은 폭력행동의;징후가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하였다.

개입은 단순히 폭력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폭력발생의 바닥에 깔린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폭력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있는데 폭력을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VicHealth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지역적 차이는 서베이조사결과에서도 반영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폭력을 '항상', '자주',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태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에서 얼마나 여성폭력을 용인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VicHealth, 2010). 성평등성과 가정폭력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성평등성이 낮은 지역거주자의 71%가 , 성평등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중 94%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1996년과 2005년 사이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육체적 폭력과 가족이나 친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상대방이나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되풀이해서 비난하는 것과 같은 학대행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폭력행위들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이나 전화에 의한 스토킹과 성희롱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데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체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17%의 응답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상대방이 나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되풀이해서 비난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아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9%의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배우자를 통제하기는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해서 비육체적 가정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육체적 가정폭력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적인 질적조사에 의하면 토착주민들은 가정폭력을 보다 협소하게 생각해서 육체적인폭력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n=2004)			2006(n=2000)		
_	예	아니오	모름	예 아니오		모름
이 행동은 가정폭력입니까?						
위 협 하 기 위 해 서 떠밀거나 뺨을 때림	97	2	1	98	2	<1
강요된 성행 위	94	4	2	98 ^	1	<1
배우자를 위 협하거나 상해 를 입히기 위 해 물건던지기	91	8	1	98∧	<1	<1
상대방에게 고함지르기	77	20	3	87∧	12	<1
친구나 가족 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 배우자의 사회 생활을 통제하 기	74	23	3	82^	17	1
배우자가 나 쁘거나 쓸모없 다고 반복해서 비난하기	71	26	3	83 ^	17	<1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배우자를 통제하기	62	33	5	69∧	29	2
상해를	88	10	2	n/a	n/a	n/a

가하겠다고						
위협하기						
가족구성원에						
게 상해를	n/a	n/a	n/a	99	1	1<
가하겠다고						
위협하기						
이러한 행동은	은 여성에 다	l한 폭력입니	⊣까?			
뒤를 밟기	n/a	n/a	n/a	93	6	1
전화로	n/a	n/a	n/a	90	9	1
성희롱하기	11/ a	11/ a	11/ a	30	3	1
이메일이나						
편지로	n/a	n/a	n/a	86	12	2
성희롱하기						

[표 13] 폭력행동형태-1995와 2006 비교(%)

1995(n=2004)			2006a		
93	5	2	97 ^	2	1
n/a	n/a	n/a	5	93	2

[班 14]

누가 폭력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7%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0% 정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	1995(n=2004)			2006(n=2000)		
가?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주로 남성이	49	51	50	42	39	40
모두 같이 했으나, 주로 남성이	35	37	36	31	42	37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10	9	9 ^	24**	17	20

모두 같이 했으나, 주로 여성이	3	1	2	1	1	1
주로 여성이	2	1	2	1	0	0
잘 모름	1	1	1	1	1	2

[丑 15]

△남성과 여성모두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P<0.01수준에서 1995년과 2006년 자료가 차이가 남.

\*\* 2006년도 자료의 표본내에서의 성별차이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Taylor & Mouzos 2006. Vichealth CATVAWS(Weighted data); OSW, 1995.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폭력을 얼마나 정당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의 배우자와 이전의 배우자를 비교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하였 다.

응답자의 97%이상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남성중 4%가 현재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가정폭력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묻는 질문은 폭력이란 상황의존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에 토대를 둔 것이다.

	폭력이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수준					
설정된 상황	1995(n=2004)			2006(n=2000)		
	찬성	반대	모름	찬성	반대	모름
현재의 배우자와 부인일	현재의 배우자와 부인일 때					
배우자에게 대들 때	1	98	1	1	98	1
돈을 낭비할 때	1	98	1	2	97	1
배우자에게 잔소리할	2	96	2	2	97	1
집안을 어질러 놓았을 때	1	98	1	n/a	n/a	n/a
제때 식사를 주지 않을	1	98	1	n/a	n/a	n/a

때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1	0.0	1	/-	-/-	/
거부할 때	1	98	1	n/a	n/a	n/a
다른 남자와의 잠자	6	90	4	n/a	n/a	n/a
리를 받아들일 때	Ů	30	1	11/ 4	11/ 4	11/ 4
또다른 남자와의 잠						
자리와 성관계를 받아	n/a	n/a	n/a	4	93	1
들일 때 가사를 분담하지 않						
	n/a	n/a	n/a	1	98	1
을 때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할 때	n/a	n/a	n/a	1	98	1
자녀에게 잘 대우해	,	,	,	0	0.7	1
주지 않을 때	n/a	n/a	n/a	2	97	1
부인의 친구들에게	,	,	,	_	0.5	_
지나치게 친하게 굴 때	n/a	n/a	n/a	2	97	1
부인이 가족보다 자						
신의 직업상의 경력을	n/a	n/a	n/a	1	97	1
우선시할 때						
전배우자이거나 전부인	일 때			<u>'</u>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n/a	n/a	n/a	1	98	1
때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n/a	n/a	n/a	2	97	1
접근할 때	11/ a	11/ a	11/ a	2	91	1
자녀가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	n/a	n/a	n/a	1	97	2
할 때 그녀가 재산의 처분						
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n/a	n/a	n/a	1	97	1
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새로운 관계	n/a	n/a	n/a	1	98	1
를 시작하고자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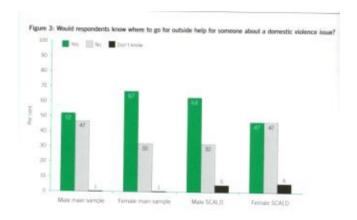
[표 16]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1995-2006년 비교 (%)

	폭력이 용인된	된다고 생각하는	: 사람의 비
	중(%)		
	남성	여성	전체
가정폭력			
가정폭력 일시적으로 통제가 안되서 사람			
들이 화가난 경우의 가정폭력은 용인할	25	20	23
수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가 심한 음주상태에 있다	8	8	8
면 가정폭력은 용인할 수 있다	0	0	0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심한 알콜중독	0	7	8
자라면 가정폭력은 용인할 수 있다	9	1	0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			
해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가정폭력	29+	19	24
은 용인할 수 있다			
성폭력			
강간은 남성의 섹스에 대한 욕구표출을	44+	32	38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44+	32	30
성폭력은 그 희생자가 심한 알콜상태에	_	0	4
있다면 성폭력은 용인할 수 있다	5	3	4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 심한 알콜상태에	4	2	3
있다면 성폭력은 용인할 수 있다	4	4	3

[표 17]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2006(%)

	1995(n=2004)			2006(n=2000)		
	찬성	반대	모름	찬성	반대	모름
	83	14	3	84	10	6
	77	22	1	81	17	2
	18	80	2	14 ^	82	4
	n/a	n/a	n/a	40	17	43
	n/a	n/a	n/a	50	45	5
	n/a	n/a	n/a	91	7	2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	는					
	77	15	8	65∧	25	10
	20	78	2	11 ^	86	3

[표 18]



# 4. 방문 일정

일정		내용	장소(주소및 연락 처)
7.8(금)	인천출발 멜 버 른 도착	16:10 인천출발 (멜버른행 항공편은 월, 수, 금 운행됨. 월요일 오전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 출발함)	
7.9(토)	06:05	멜버른 도착	
7.10(일)		소속: Domestic Violence Victoria (DV Vic) 면담자: Alison Macdonald	주소: Level 2, Queen Victoria Women's Centre 210 Lonsdale St, Melbourne 3000 Phone: 03 9921 0820
7.11(월)		소속: Domestic Violence Victoria (DV Vic) 면담자: Dr. Angela Taft MPH PhD	子소: 215 Franklin St, which is between William and Queen St and close to both Flagstaff station and the Elizabeth St tram National Convenor, PHAA Women's Health SIG Ph: 61 (3) 8341

			주소: 215 Franklin		
		면담자: Rachael Green	St, which is		
		소속: Mother and Child	between William		
		Health Research	and Queen St and		
7.12(화)			close to both		
[ 7.12(와)			Flagstaff station		
			and the Elizabeth		
			St tram National		
			Convenor, PHAA		
			Women's Health SIG		
			주소: Industry,		
		면담자: Rachael Green	Workforce &		
		소속: Family Violence Reform	Strategy Division		
		Coordination Unit Office of	Department of		
7.9(수)		Women's Policy	Human Services 50		
			Lonsdale street		
			(near the corner of		
			Spring and		
			Lonsdale Streets)		
		Violence and discrimination	School of Social		
7/10(목)		Against Women Research	Science Victoria		
[[[]]]			3086 Australia		
		Network" 참석			
		면담자: Dr Tracy Castelino			
7/11(금)		MSW			
		소속: Consultant,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7/12(토)	멜버른	7: 45			
	출발	5: 55			
	인천도착	o. oo			

# 콜로키움 프로그램

# Colloquium Program

# Thursday 14<sup>th</sup> July, 2011

## The Victoria Room, QV Women's Centre.

9.30-9.45	Opening Address
9.45-10.45	Intersectionality, Marginality and Migration (Session One)  Professor Sandy Gifford (La Trobe University)  Professor Sharon Pickering (Monash University)
10.45-11.0	Morning Tea
11.00-12.0	Dominance and Difference: 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Session Two)  Professor Tanya Fitzgerald (La Trobe University)  Dr Diane Sisely (RMIT)
12.00-1.0	<u>Lunch</u>
1.00 - 2.15	Prevention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Session Three)  Dr Sue Dyson (La Trobe University)  Dr Wendy Larcomb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rofessor Jenny Morga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2.15-3.15	Gendering Health (Session Four)  Dr Heather Row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Dr Angela Taft (La Trobe University)
3.15-3.30	Afternoon Tea
3.30-4.30	Round Table Discussion
4.30-4.35	Closing Comments
4.35-5.30	Drinks (location TBC)

# ■ 개최 기간 및 장소

▶ 기간 : Thursday 14<sup>th</sup> July, 2011

▶ 장소 : The Victoria Room, QV Women's Centre.

•